

# 「2019년도 주얼리 협업지원사업」 안내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종사자간의 협업 모듈을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는 「2019년도 주얼리 협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 1. 사업개요

- (사업명) 2019 주얼리 협업지원사업
- (사업목적) 주얼리 업계 종사자가 직접 공공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실행함으로써 산업 내 협업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19년 11월 29일(금)
- (지원대상) 주얼리 관련 단체, 주얼리 업체(인) 3개(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사업자등록증상 서울시 소재의 주얼리 관련 단체 및 업체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 ※ 기획공모의 경우 서울주얼리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진행되어야 함.
- ※ 본 사업의 저작권은 서울시 및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 있어 수익사업은 제한되며, 동일사업으로 회계처리기준상 타기관의 중복지원 불가

## 2.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 2019년 4월 9일(화) ~ 4월 22일(월) 오전 9시까지
- (대면평가) 2019년 4월 24일(수) 13시~19시
- (결과발표 및 우선순위 협상) 2019년 4월 24일(수) ~ 4월 26일(금)
- (계약체결 및 사업진행) 2019년 5월 2일(목) ~ 11월 말
- ※ 세부일정은 사전 협의 없이 변경·조정 될 수 있습니다.

## 3.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금액(VAT 포함)
자유공모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	사업당 300~1,500만원 내외 (총 3,000만원)
기획공모	주얼리 링 사이즈 표준화 캠페인	사업당 300~4,300만원 내외 (총 8,640만원)
	국제 규모의 디자인공모전	
	한국 주얼리 제조기술 관련 경진대회	

- 지급방식 : 협약체결 후 사용계획에 따라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교부하고 정산 서류 제출 후 다음단계로 진행 (회계기준은 [첨부 1] 참조)

#### 4. 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기준

- (개최목적) 2019 주얼리 협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선정을 위해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주얼리 업계·학계 및 신사업운영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위 원 장 : 평가당일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평가 참여)
  - 평가위원 : 총 6명 이내
- (대면평가) 15분 이내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발표자는 주관업체의 대표자(단체의 경우 실무책임자)가 원칙이며, 그 외의 경우는 신청서류만으로 평가(발표방식은 PPT, 유인물 등 제한 없음)
  - ※ 대표자(단체의 경우 실무책임자)가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 공문으로 발표자 변경 가능
- (심사기준) 사업의 적절성(30%) / 사업계획(50%) / 기여도(20%)
  - 자유공모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심 사 지 표	배 점	
사업 적절성(30)	사업의 공공성	- 주얼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인가?	15	30
	협업의 필요성	- 협업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가?	15	
사업 계획(50)	대표자의 적극성	- 총괄 대표자가 적극적인가? (발표 및 참석여부)	10	50
	예산의 적절성	- 예산 계획이 적절한가?	15	
		- 사업비, 기타 항목 편성이 적절한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 참여인력(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15	
사업의 가능성	- 본 사업의 결과가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기여도(20)	신시장개척	- 주얼리 산업의 판로개척에 긍정적인가?	10	20
	일자리창출	- 주얼리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가?	10	
합 계			100	

- 기획공모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심 사 지 표	배 점	
사업 적절성(30)	사업의 필요성	- 기획주제와 맞는 계획인가?	15	30
	협업여부	- 참여업체별 협업 구성은 적절한가?	15	
사업 계획(50)	대표자의 적극성	- 총괄 대표자가 적극적인가? (대응 투자 등)	10	50
	예산의 적절성	- 예산 계획이 적절한가?	10	
		- 사업비, 기타 항목 편성의 적절한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 참여인력(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15	
사업의 가능성	- 운영계획이 구체적인가?(홍보 등)	15		
기여도(20)	산업 발전	- 주얼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가?	10	20
	운영계획의 혁신성	- 제안한 계획이 혁신적인가?	10	
합 계			100	

## 5. 지원 절차 및 일정

추진단계		주요 진행사항	일시
1	사업 공고	-서울주얼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카카오톡, SNS 홍보 병행	2019.04.09.(화) ~ 04.22(월)
2	제안서 접수	- 메일 접수(sjc@seouljewelry.or.kr) - 자유/기획주제, 단체/개인(업체)	2019.04.22.(월) <b>오전 9시 마감</b>
3	선정위원회 (대면평가)	주얼리 업계·학계 및 신사업 운영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2019.04.24.(수)
4	결과발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안내	2019.04.24.(수)
5	우선순위 협상	- 우선순위로 업체 협상 및 면담 사업계획서(예산) 보완 및 수정	2019.04.25.(목) ~05.02(목)
6	사업진행 계약체결	- 사업계획서, 협약서 서명	2019.05.02.(목) ~05.08.(수)
7	단위별 사업진행	- 사업진행사항 정기확인 및 보고 - 선금, 중도금 지급	2019.05.02.(목) ~ 11.08.(금)
8	단위별 사업결과 보고	- 사업별 결과물 검수 및 확인 - 잔금 지급	2019.11월 말
9	최종결과보고 작성	- 주얼리 협업지원사업 최종평가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019.11월 말

※ 선정위원회 평가시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사업특성상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6. 제출서류

- 1) (서식1) 2019년 주얼리 협업지원사업 제안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2) 참여업체(인)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3) (서식2) 주얼리인 참여자 서명부 1부
- 4) 참여업체(인)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7. 유의사항

### (협약 제외대상)

-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개인, 단체 및 업체
- ※ 협약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인감증명서,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협약) 사업계획 및 예산 협약에 따라 제안내용은 조정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제외대상 또는 불충분한 사항이 발생할 시 취소될 수 있음.

(기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주제, 사회·윤리적으로 무리를 야기하는 주제, 저작권이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주제 등은 신청 제외

## 8.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019년 4월 9일(화) ~ 4월 22일(월) 오전 9시 까지(마감이후 제출·수정 불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jc@seouljewelry.or.kr](mailto:sjc@seouljewelry.or.kr))

첨부 : 1. 회계처리기준 및 양식

[첨부 1]

## 2019 주얼리 협업지원사업 회계기준

- (지출시 서류) 견적서, 비교견적서(타 업체),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입금 후 이체증빙서류(입금확인증), 물품사진
- (유의사항) 결산 후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를 반환할 수 있음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운영비	교통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교통비 ※ 거리별 교통비 운임만 해당(철도 일반석,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
	보험료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사 보험료
	운반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비, 택배비, 퀵서비스
	교육훈련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사료(별첨 가 참조), 원고료(별첨 나 참조)
	인쇄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쇄, 복사비, 출력비
	소모품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소모성비품이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
	수수료 비용	사업수행 과정에서 은행송금수수료, 도메인등록수수료, 장소대여료
	광고 선전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광고제작, 팸플릿, 신문, 라디오 광고, 전시회
	회의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의·선정평가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식사비: 1인당 8,000원 이내 / 회의비: 2시간 이상은 150,000원, 2시간 미만은 100,000원 이내 가능)
	잡비	계정과목 이외의 비용 (※ 센터와 협의 후 진행)
부가세	-	부가세 10%

**※ 불인정항목**

- 환급성이 있는 기자재(ex 금, 다이아몬드 등)
- 장비(소프트웨어 포함), 도서, 고정 인건비 등

# 가

# 강사료 지급기준

[서울인재개발원 지급 기준]

##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시간	초과시간	
특별 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건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 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 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 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 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 나

## 원고료 지급기준

[서울인재개발원 지급 기준]

- (지급대상)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li> <li>○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li> <li>-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li> </ul> </li> <li>※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li> <li>※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li> </ul>
	지급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li> <li>-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li> <li>-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li> </ul> </li> </ul>

※ 공직자등(「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